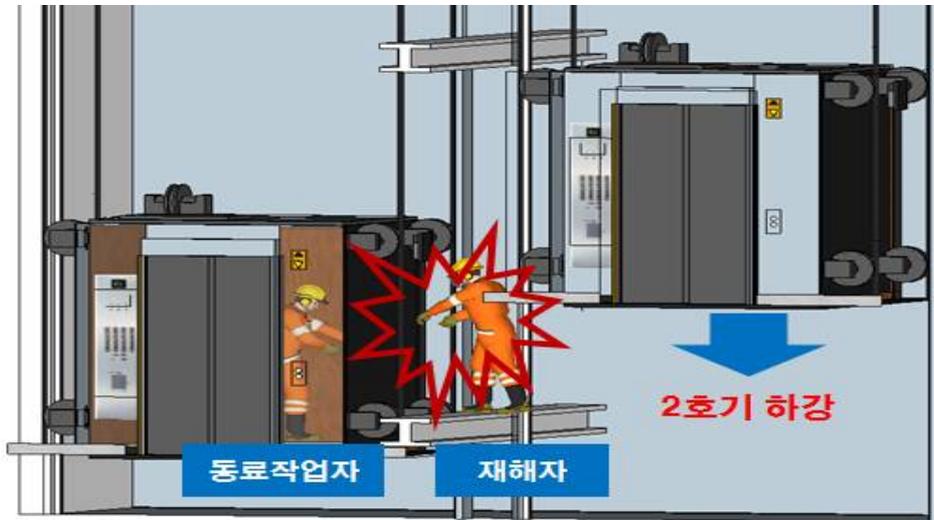


승강기 운반구 내부 핸드레일 설치(고정)작업 중 사망

재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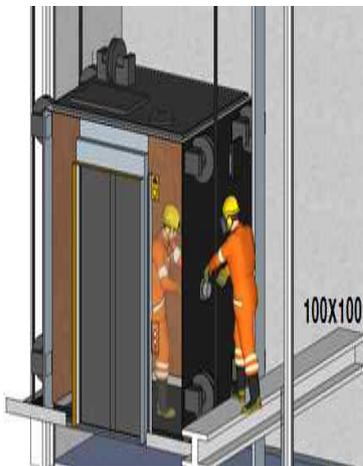
2018년 0월 00일 16시 10분경 □□광역시 소재 ●●사옥 내 노후 승강기(엘리베이터) 인테리어 공사 중 지하 3층에서 승강기 1호기 운반구 내부 핸드레일을 설치(고정)하기 위해 동료작업자 재해자가 운반구 외부 승강로 중간 빔 위에 서서 작업 중 승강기 2호기가 하강하면서 1호기와 2호기 운반구 사이(60cm)에 신체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

재해 발생 상황도



(피트 바닥면~카 바닥면 높이 : 1.8M, 카 바닥면~중간 빔 하부 0.3M, 중간 빔 자체 높이 : 0.1M)
 (동료작업자 : 카 내부에서 전동드릴로 볼트 조임, 재해자 : 카 외부에서 스패너로 너트를 잡아 줌)

관련 그림(사진)



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



승강로 내부 중간 빔



핸드레일 볼트 고정 모습

■ 재해 발생 원인

- 승강로 내부에서 정비 및 보수 등의 작업 시 사전에 승강기 운영을 미 정지
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,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- 재해발생 승강기는 동일 승강로 내에 2대(1호기, 2호기)가 인접하여 운행되고 있으나 2호기 운영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로 내부에 진입하여 1호기 운반구 외부에서 작업을 실시함

■ 재해 예방 대책

- 승강로 내부에서 정비 및 보수 등의 작업 시 사전에 승강기 운영을 모두 정지
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,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- 정비 및 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승강로 내부로 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일 승강로 내 승강기 운영을 모두 정지토록 하여야하고 전원 투입부 등에는 “정비 중”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불시에 승강기가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승강기 운반구 내부 핸드레일 설치방법 변경(권고사항)
 - 승강기 운반구 외부에서 너트를 잡고 내부에서 볼트를 조이는 현재의 핸드레일 설치방법을 승강기 운반구 내부에서 고정설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·검토
- 작업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(권고사항)
 - 승강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현장 상황 및 여건에 따른 안전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킴